

구강진료보조원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국민구강보건연구소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및 국민구강보건연구소

김종배 · 장기완*

A STUDY ON THE CHAIRSIDE DENTAL ASSISTANTS IN THE REPUBLIC OF KOREA

Kim Johng-bai, D.D.S., M.S.D., Ph. D. and *Chang Kee-wan, D.D.S., M.S.D.,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It is recommended that the chair-side dental assistant should be utilized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dental health care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was no chair-side dental assistant by legally. So the authors investigated and discussed for the development of chair-side dental assistant in Korea.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dental health care chair-side dental assistants should be developed.
2. Institution of chair-side dental assistant will be established legally.
3. Trained chair-side dental assistant will be positioned in dental clinics for dentist and health centers for dental public health.

- 목 차 -

I. 서 론

I. 서 론

II. 본 론

1. 구강보건진료자원의 분류
2. 현 황
3.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
4. 대 책

III. 결 론

참고문헌

오늘날 각국에서는 양질의 구강보건진료를 보다 많이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구강보건진료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 구강보건진료수요를 보다 많이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구강보건보조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

다. 구강보건보조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게 하므로써, 치의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이 생산된 구강보건진료를 국민대중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구강보건보조인력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강보건보조인력에의 교육훈련과 활용에 관한 문제를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구강보건보조인력에 관한 전문위원회는 구강보건보조인력을 치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구강진료보조원(chairside dental assistants)을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분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에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간호조무사나 구강위생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원래 구강진료보조원으로 양성된 인력이 아니므로, 구강진료보조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교육적으로도 낭비라는 점에서 간호사에 우선하여 구강위생사를 진료실진료비 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실제로 구강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은 주로 간호조무사이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별도로 법정제도화하여, 양성 활용하므로써 구강보건진료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 본 론

1. 구강보건진료자원의 분류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간에,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투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모든 요소를 구강보건진료자원(resources for dental health cares)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강보건진료자원은 인력자원과 자본 및 중간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력자원은 구강보건인력을 말하고, 구강보건인력(dental manpower)이란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구강보건인력은 1968년 New Dehli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보건기구 구강보건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강보건관리인력(professional dental personnel)과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operating dental auxiliaries) 및 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nonoperating dental auxiliaries)으로 분류되고, 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은 다시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과 기공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구강보건관리인력은 치과대학을 졸업한 독립적인 구강보건인력으로, dentist, dental surgeon, dental officer, dental specialist등이 열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네가지 구강보건관리인력은 나라에 따라서 상이한 구강진료제도나 교육제도 때문에, 명칭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치의사와 같은 구강보건인력이다.

특히 dental specialist는 치과전문 의사라고 직역되는 구강보건인력인 까닭에 전문치의사(specialist in dentistry)와 구분되는 인력이라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치과전문 의사는란 전체 보건지도와 진료 중에서 구강보건지도와 구강진료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의사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반면, 전문치의사는란 구강보건지도와 구강진료 중에서도 특정분야의 구강보건지도와 구강진료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치의사를 말한다. 그리고, 구강보건보조인력은 구강보건관리인력의 지시 감독하에 있는 인력이라고 정의되었으며, 구강보건보조인력의 업무도 정리 발표되었다. 우리 나라의 치의사는 구강보건관리인력에 속하고, 구강위생사는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이며, 치아기공사는 기공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이고,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및 구강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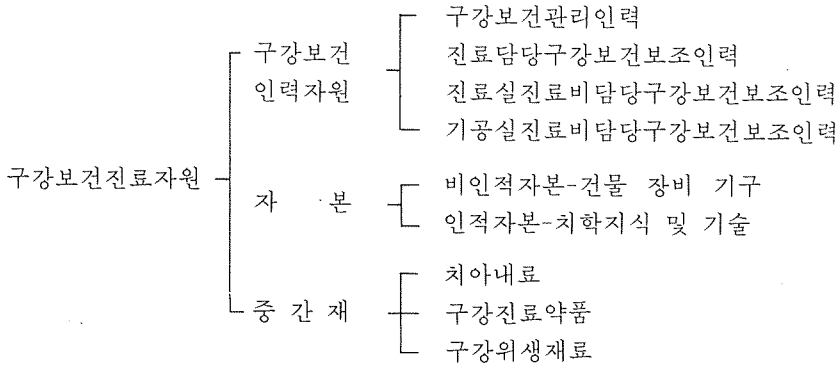


그림 1 구강보건진료자원

생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서 구강진료보조원(chairside dental assistant)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구강위생사와는 별도로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강진료보조원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자본은 또 건물 장비 기구 등의 비인적자본(nonhuman capital)과 치학지식과 구강진료기술 등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구강보건진료를 생산하는 치학지식 및 구강진료기술은 무형적인 것이지만, 모두 인간이 만들어 낸 것으로서, 구강보건진료의 생산에 불가결한 생산요소라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자본으로 인정된다. 즉, 인적자본과 비인적자본은 다같이 생산에 공헌하며,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중간재는 치아재료와 구강진료약품 및 구강위생재료로 더 구분할 수 있다.

(2) 기공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
-치아기공사

그림 2 구강보건인력

2. 현 황

(1) 우리나라

우리 나라 지역 사회에서 개원치의사는 92.31%가 진료실진료비 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었고,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개원치의사는 23.08%에 불과했으며, 기공실진료비담당 구강보건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개원치의사는 17.19%이었다. 구강보건보조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분업구강진료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치의사의 생산성과 수입이 증대되고, 보다 많은 구강보건진료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구강보건진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Barish는 치의사가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에게 일부의 구강진료를 위임하므로써, 구강진료비를 인하여, 구강진료의 공급을 증가시키면서도, 치의사는 더욱 전문적 구강보건진료업무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치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고 검토하였다. 한편, Lotzta Brealey Soricelli 등은 전통적으로 치의사가 하던 구강진료의 일부를 환자가 만족할 정도로 숙련된 구강보건보조인력이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구강

구강보건인력

1. 구강보건관리인력-치의사, 전문치의사, 한치치의사
2. 구강보건보조인력
 - 1)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
 - 학교치아간호원, 치아치료사, 구강위생사
 - 2) 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
 - (1)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
 - 구강진료보조원

보건보조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고 분업구강진료제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명의 지역사회치의사는 두명의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과 두명의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과 한명의 기공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과 한명의 접수부를 직접적으로 감독 활용함과 동시에, 세명의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을 간접적으로 감독 활용하는 정도까지, 분업구강진료제도를 발전시키도록 권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개원치의사들은 구강보건보조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분업구강진료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Mumma가 개발한 치의직무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개원치의사의 직무상분주도를 조사한 결과로부터 산출한 치의직무지수는 1.73점이어서, 아직까지도 개원치의사들이 더 많은 환자가 내원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개원치의사의 고급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원치의사들이 구강보건보조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분업구강진료제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치의사는 구강보건보조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므로써 구강진료생산성을 증가시켜 자기의 수입을 늘리면서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진료봉사를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구강보건보조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활용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구강보건보조인력의 활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강진료행위를 열거하고, 열거한 구강진료행위를 계속하는 과정에 구강보건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구강보건보조인력을 활용하는 원리는 구강보건보조인력의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치의사의 약점을 보충하고 지역사회치의사의 장점을 더욱 보장하는 것이다.

1) 구강진료보조원의 활용 : 가능하면 구강진료보조원을 전임으로 채용하여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놀리지 않고 활용할만한 양의 구강진료업무가 있다면, 두명의 구강진료보조원을 채

용하여, 한명은 구강진료의자 옆에서 계속하여 구강진료보조를 하게 하므로써 사수구강진료제도를 확립한다. 우리 나라에는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가 잘 규격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강진료보조원이 정규교육훈련과정으로 양성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치의사는 개별적으로 구강진료보조원의 선정과 교육훈련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구강진료보조원을 선정하고 교육훈련을 시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강진료보조원으로 적합한 인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사회치의사는 구강진료보조원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열거한 업무설명서(job description)를 작성한다. 작성한 업무설명서는 채용 후에 할 교육훈련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구강진료보조원을 지명하는 자가 구강진료보조원으로 일하고자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어서, 충분한 수의 구강진료보조원 지명자를 모집하여 면접과정에 여러명의 지명자 중에서 필요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 면접은 필히 한가한 시간에 하도록 한다.

가능하면, 정규훈련과정으로 양성된 구강진료보조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채용 후에 지역사회치의사 자신이 체계적인 교육훈련(systematic training)을 시켜 활용한다. 지역사회치의사는 구강진료행위과정을 규격화하여, 구강진료보조원이 치의사의 지속적인 구강진료행위과정의 동작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구강진료보조원은 자신의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구강위생사의 활용 : 미국에서는 한달전에 예약한 구강병환자를 진료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한명의 구강위생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구강진료업무량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구강위생사는 교육훈련을 받고 면허된 구강진료를 분담하며, 자기가 받은 급료 이상의 수입을 구강진료기관에 보장해 주고, 지역사회치의사가 보다 복잡한 구강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어, 지역사

회치의사와 구강질환자에게 다같이 이득이 된다고 주지되어 있다.

구강위생사에 대한 급여제도는 대개 봉급제 (straight salary)로서, 일정기간에 일정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일정기간에 일정액의 기본 봉급 (minimum salary)을 지급하는 외에 치면 세마술 같은 특정구강진료행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구강진료행위에 대한 수수료 (commission)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수명의 개원 치의사가 한명의 구강위생사를 채용하여, 한 치의원에서 주당 일일이나 이일씩 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두명 이상의 지역사회치의사가 한명의 구강위생사를 고용하여 활용하는 제도나 수당급여제도가 구강위생사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강위생사가 제약없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운영하며 구강진료과정에 개별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치면세마와 기타의 구강병예방진료를 할 수 있어야 구강위생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치의사는 구강위생사가 효과적으로 구강병예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구강진료과정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구강위생사는 단순히 구강진료실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강보건진료에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구강보건보조인력이기 때문이다.

(2) 세계각국

가. 인용자료

WHO : World Health Statistics. 1983.

나. 총조사국가 : 192개국

- 1) 치아치료사 : 11개국
- 2) 치아간호원 : 42개국
- 3) 구강위생사 : 28개국
- 4) 구강진료보조원 : 77개국
- 5) 치아기공사 : 94개국

다. 대륙별 국가별 구강보건보조인력 종류

대륙	조국	사치	치치	치아	구강	구강	치치	치아
	190	11	42	28	77	94		
아프리카	50	3	12	4	18	23		
남북아메리카	47	0	3	4	15	17		
아시아	41	2	12	6	14	25		
유럽	33	1	8	8	16	17		
오세아니아	18	5	7	6	14	12		
소련	1	-	-	-	-	-		

<용어 해석>

1. Dental therapist : 치아치료사
2. Dental nurse, Dental operating auxiliary : 치아간호원
3. Dental chairside assistant, Dental attendant, Dental surgery assistant, Nonoperating dental auxiliary : 구강진료보조원
4. Dental technician : 치아기공사
5. Dental Hygienist : 구강위생사

3.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

가.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

구강진료보조원은 치의사의 구강진료보조자로서 구강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그러므로, 구강진료보조원은 구강진료를 담당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정리한 구강진료보조원 업무

- (1) 환자접수
- (2) 구강진료기구의 소독과 관리
- (3) 구강진료전환자관리
- (4) 구강진료준비
- (5) 진료용장비 및 기구의 운반
- (6) 충전재료의 준비와 연화
- (7) 구강진료후 환자관리
- (8) X선 사진현상고정 및 관리
- (9) 전신마취환자관리
- (10) 진료기록작성 및 관리의 보조
- (11) 잇솔질방법교습

일부 국가에서는 구강진료보조원에게 라바댐 장착 매트릭스장착 수지충전재료장착 충전물표면연마 치아표면연마 구내X선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강진료보조원에게도 극히 제한된 구강진료행위이기도 하나 일부 구강내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지역 국가와 중남미지역 국가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를 위와 같이 정리하고 각국에서는 위에 열거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개원치의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필자가 결정한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국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

- (1) 환자의 등록과 접수
- (2) 구강진료기구소독과 정리 및 관리
- (3) 구강진료를 위한 기구준비
- (4) 진료준비로서의 환자안내
- (5) 구강진료보조
- (6) 충전재료의 준비와 연화
- (7) 치료받은 환자가 갈 때까지의 간호
- (8) X선사진을 촬영 현상 보관하는 치의사 업무의 보조
- (9) 구강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치의사의 업무보조
- (10) 잇솔질방법교습
- (11) 치아재료의 주문과 구강진료약속부 같은 간단한 기록부의 작성과 유지
- (12) 기구정리
- (13) 진료비영수
- (14) 재산점검과 관리(치기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치기공실재산에 관하여는 제외)
- (15) 기타 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나. 구강진료보조원의 질적관리

구강진료보조원의 질적 관리도 양성과정과 자격시험기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구강진료보조원의 교육훈련: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양성하기도 하나, 치과대학

에서 양성하는 나라도 있고 민간기관에서 양성하는 나라도 있다.

가) 교육훈련대상자의 기초교육수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최한 구강보건인력의 교육 훈련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는 2년간의 중등교육을 필한 자 중에서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는 그 나라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기초교육수준을 적절히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중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여 간호조무사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여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다.

나) 교육훈련기간: 구강보건보조인력의 업무는 숙련을 요하므로, 숙련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구강보건보조인력활용의 기본 개념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구강보건보조인력의 교육훈련에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제적 인력관리면에서 보면, 교육 훈련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훈련의 목표를 설정하여 가급적 단기간 내에 충분히 숙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강보건보조인력의 급료는 교육훈련기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훈련기간을 정할 때에는 구강보건보조인력이 담당할 업무의 내용 뿐만 아니라 급료수준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개주에서는 구강진료보조원을 3년에 양성하기도 하나 나머지 다른 주에서는 6개월에 양성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2년에 양성하고 있다.

다) 교육훈련과정: 우리 나라에서도 머지않은 장래에 구강진료보조원 제도를 별도로 채택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구강진료보조원교육훈련개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개발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잠정적인 구강진료보조원의 교육훈련과정안을 작성 제시한 바 있었다.

교육훈련개발의 일반원칙

- (1) 현재의 한국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훈련을 개발한다.

- (2) 구강진료보조실습 위주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한다.
- (3)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교육훈련을 개발한다.

대한치의사협회 구강진료보조원교육훈련개발위원회는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견학과정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현장구강진료보조실습과정의 3단계과정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필요이상으로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훈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한편, 구강진료보조원을 숙달된 구강진료보조원으로 교육훈련시키려면, 최소한 약 6개월간의 교육훈련과정은 되어야 하리라고 보나 우선 최소한의 교육훈련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강진료보조원의 교육훈련과정(안)

- 1) 소개견학과정
 - 1-4 구강병원소개견학
 - 5-8 치의원소개견학
- 2) 기본교육훈련과정
 - 9-13 구강해부생리학개요
 - 14-18 치아형태학
 - 19-20 치열의 형성과정
 - 21-22 치열의 증령적 변화
 - 23-24 구강세균학적 원리
 - 25-26 구강진료기구
 - 27-28 치아우식증과 그 계발증
 - 29-30 충전재료별 충전법
 - 31-32 국소마취법
 - 33-36 인레이 금관 가공의치 제작법
 - 37-38 치근관치료법과 치근단절제술
 - 39-40 치주병예방법
 - 41-42 치주병치료법
 - 43-44 발치법
 - 45-46 전신마취개요
 - 47-48 충의치제작법
 - 49-50 국소의치제작법
 - 51-52 치열교정의 원리와 방법

- 53-54 공중구강보건 및 구강보건교육
- 55-56 구강방사선학적원리와 기술
- 57 환자접수 및 안내법
- 58 구강진료약속조정법
- 59 전화사용법 및 서신연락법
- 60 구강진료기록부작성법
- 61 구강진료기록관리체계
- 62 구강진료의자와 구강진료대의 사용 및 관리법
- 63 구강X선촬영기관리법
- 64 기구함관리법
- 65 구강진료기구 가는 방법
- 66 구강진료보조실습
- 3) 현장구강진료보조실습과정
- 67-100 현장구강진료보조실습

구강진료보조원이 담당하는 업무나 구강진료보조원의 급료수준도 지역사회나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구강진료보조원을 양성하는 교육훈련과정도 지역사회나 나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싱가포르의 구강진료보조원 교육훈련과정을 참고자료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학년 교육훈련과정 : 싱가포르종합병원(Singapors General Hospital) 악안면구강의과에서 담당한다. 처음 4주동안은 소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와 견학을 통하여 전 교육훈련과정의 개요를 인식시킨다. 이 소개과정에서는 피교육자가 배치되는 각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일반구강진료보조법을 교육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훈련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개과정의 교육훈련내용

- 사람의 외모와 행위
- 환자접수와 안내
- 구강진료약속의 조정법
- 전화사용법
- 편지쓰는법
- 구강진료기록관리방법과 기록이용체계

진료기록부작성법
 구강진료의자와 진료대의 사용 및 관리법
 구강X선촬영기관리법
 기구함관리법
 구강진료기구를 가는 방법
 구강진료기구소독법
 구강진료실정돈법
 체온 맥박 호흡율의 측정법
 응급처치법

50-51 공중구강보건 및 구강보건교육
 52-53 구강방사선학적 원리와 기술

과별체류기간

보존과(한국의 보존과 예방치과 소아치과를 합한 과)	3개월
치주병과	1개월
구강외과	2개월
치아보철과	2개월
치열교정과	1개월
구강방사선과	2개월

소개과정이 끝난 다음부터 1학년 본 교육과정이 시작되는데 피교육자는 1학년중에 53시간의 강의를 받으며 각 과를 순회하면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1학년 본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자들이 받는 강의는 다음과 같으며 각 과를 순회하는 과정에 피교육자는 항상 치아간호부 치아간호원 선임구강진료보조원 및 치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다양한 형태의 구강진료보조법을 배운다고 하겠다. 각 과를 순회하는 과정에 각 과에 체류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본 교육과정의 강의내용

강의번호	강의제목
1-10	해부생리학 개요
11-15	구강해부학 및 치아형태학
16-17	치열의 형성과정
18-19	치열의 증명적 변화
20-21	구강세균학적 원리
22-23	소독법
24-25	치아우식증과 그 계발증
26-27	충전재료별 충전법
28-29	국소마취법
30-33	인레이 금관 및 계속가공의치제작법
34-35	치근관치료법과 치근단절제술
36-37	치주병관리법
38-39	치주병치료법
40-41	발치법
42-43	전신마취개요
44-45	총의치제작법
46-47	국소의치제작법
48-49	치열교정의 원리

2) 제2학년 교육훈련과정 : 제1학년 교육훈련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작은 구강진료소나 이동 구강진료소에 배치되어 치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구강진료보조원으로 일하며, 실무교육을 더 받거나 학교구강보건소에 배치되어 치아간호원이나 선임구강진료보조원의 감독 아래에서 일하며, 실무교육을 받는다.

3) 자격시험 : 우리 나라에서는 시도별로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양성과정의 시험으로 대처한다. 1학년 말에 중간시험이 있고 2학년 말에 최종시험을 치른다. 각 시험과정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다 치르게 되어 있다.

3. 구강진료보조원의 양적 관리

일반적으로 구강진료보조원의 직업수명이 짧기 때문에 구강진료보조원의 과잉양성은 문제가 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구강진료보조원의 양적관리기준을 제시한 국가는 아직 없다.

4. 대 책

구강진료보조원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원칙적으로) 간호사를 진료실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나 구강위생사를 활용할 수도 있게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구강진료보조원을 별도로 양성하여 치의사가 구강진료를 하는 과정에 구강진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의료법 제2조 2항에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강진료인력이 아닌 까닭에 모든 치의사는 간호사는 간호사를 구강진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실제 간호사를 구강진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58조 2항에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임무가 치의사가 하는 구강진료의 보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강위생사는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이라는 사

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구강위생사는 구강진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치의사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치과위생사를 치과병원에서 구강진료보조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구강위생사를 명실 상부하게 진료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으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데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구강진료보조원을 별도로 양성 활용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강위생사의 본연의 임무인 치아 및 구강병의 예방과 구강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강위생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치의사의 구강진료를 보다 능률화하여 구강진료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써 국민구강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구강진료보조원제도를 법정화하는 조치로서, 의료법 제58조와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 및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 제5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의료법 제58조(간호조무사)</p> <p>(1)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2)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p> <p>(3)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p>	<p>의료법 제58조(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p> <p>(1)구강진료보조원이나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p> <p>(2)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구강진료보조업무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p> <p>(3)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을 정한다.</p>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1)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의료인의 정원은 별표4와 같다.</p> <p>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p>	<p>간호사(치과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또는 구강진료보조원)</p>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규칙의 명칭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 및 구사의 자격·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p>	<p>구강진료보조원·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p> <p>이 규칙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진료보조원·간호조무사·접골사·침사 및 구사의 자격·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구강진료보조원·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p> <p>(1)구강진료보조원은 구강진료기관에서 치의사의 구강진료를 보조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구강병환자의 등록과 접수 2.구강진료기구의 소독 3.구강진료기구, 치아재료 및 구강위생재료의 관리 4.구강진료준비 5.구강진료보조 6.충전재료의 연화 7.충전물표면연마 8.구강방사선사진을 촬영 현상 보관하는 치의사의 업무보조 9.구강진료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치의사의 업무보조 10.개별잇솔질교습 <p>(구강진료보조원·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p> <p>(1)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은 매년1회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2회 이상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3)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p> <p>(4)도지사는 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실시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3.시험과목 4.응시자격
<p>제3조(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p> <p>(1)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1회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간호보조원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년2회 이상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3)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p> <p>(4)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시험과목 4.응시자격 	<p>(1)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p> <p>(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1회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은 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년2회 이상 도지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3)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실시일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p> <p>(4)도지사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시험의 일시 및 장소 2.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장소 3.시험과목 4.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그 방법

(5) 도지시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계강습소 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계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강습소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과정(보건소에서 행한 실습을 포함한다)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배점비율)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	배점비율
1. 기초간호학 개요	35%
2. 보건간호학	20%
3. 공중보건학 개요	10%
4.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5%
5. 실기시험	30%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그 방법

(5) 도지시는 구강진료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1) 구강진료보조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공립 간호계 강습소 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강진료보조원강습소(이하 "강습소"라 한다)에서의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과 강습소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과정(보건소에서 행한 실습을 포함한다)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배점비율)

(1) 구강진료보조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구강진료보조학, 구강보건학개요, 구강보건진료법규,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	배점비율
1. 구강진료보조학(구강진료기록작성 관리법, 구내방사선사진촬영현상법, 구강진료보조법, 구강진료기구관리법, 구강진료재료취급법)	40%
2. 구강보건학 개요	20%
3. 구강진료관계법규(의료법, 보건소법, 학교보건법)	10%
4. 실기시험	30%

(2)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 보건간호학개요, 공중보건학개요, 의료 및 전염병관계법규, 실기로하고 그 시험과목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	배점비율
1. 기초간호학개요	35%
2. 보건간호학개요	20%
3. 공중보건학개요	10%
4. 의료 및 전염병관계 법규	5%
5. 실기시험	30%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

(1)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수수료 2천원의

제6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등)

(1)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수수료 2천원의 당해지

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강습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2.강습소장이 발행한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3.건강진단서
- 4.신원증명서
- 5.사진4매(출원전 6월 이내에 탈모 정면상반신 명함판)

제7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7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간호조무사자격증교부)

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발표가 있는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84.10.15 보사령 757)

제10조(등록대장) (1)도지사는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서환, 재교부, 등록사항 정정)

(1)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증의 서환, 재교부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2)제1항의 신청(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2조 내지 제13조 삭제('76.5.8)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강습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2.강습소장이 발행한 구강진료보조원
혹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 3.건강진단서
- 4.신원증명서
- 5.사진4매(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상반신 명함판)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7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구강진료보조원자격증 및 간호조무사자격증 교부)

도지사는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대장) (1)도지사는 구강진료보조원,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서환, 재교부, 등록사항 정정)

(1)구강진료보조원 또는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의 서환, 재교부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2)제1항의 신청(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수수료로서 500원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84.10.15 보사령 717)

제15조 삭제('84.10.15 보사령 757)

제16조제16조 삭제('84.10.15 보사령 757)

제17조(준용규정)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중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호,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준용규정)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구강진료보조원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 및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시행령중 제11조 내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중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1호,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53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도지사"로 한다.

III. 결 론

저자들은 치의사의 구강진료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구강진료비 지출을 경감하며, 구강진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구강진료자원 중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강진료보조원의 필요성 및 각국의 현황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의사의 구강진료보조를 위하여 구강진료보조원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구강진료보조원제도가 법정제도화되어야 한다.
3.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된 치의사와 구강위생사가 공중구강보건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구강진료보조원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도 배치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종배 : 공중구강보건학. 초판 494-501, 고문사, 서울, 1987.
2. 김종배 : 공중구강보건학. 초판 437-443, 고문사, 서울, 1987.
3. 김종배 : 공중구강보건학. 초판 453-458, 고문사, 서울, 1987.
4. 김종배 : 공중구강보건학. 초판 481-493, 고문사, 서울, 1987.

5. 김종배, 문혁수, 신승철, 장기완, 이광희 : 구강보건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190-210, 서울, 1987.
6.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 구강진료보조원제도 개발. 치학공보 제24호, 1988.
7.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 구강진료보조원제도 개발. 치학공보 제25호, 1988.
8.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 구강진료보조원제도 개발. 치학공보 제26호, 1988.
9. 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 구강진료보조원제도 개발. 치학공보 제27호, 1988.
10. 치과의사현황. 현대치학 49호, 1988.
11. 치과의원개업. 치과임상 8(6) : 93, 1988.
12. '88공중보건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배치현황. 치과연구23(5) : 51, 1988.
13. 이재현 : 치과의사양성현황과 전망. 치과임상 8(12) : 33-43, 1988.
14. 김용현 : 치기공사 및 치위생사 양성현황과 전망. 치과임상 8(12) : 44-49, 1988.
15. 건의문. 치과임상 8(12) : 25, 1988.
16. 장도훈, 김종배 : 한국분업구강진료의 유형과 구강진료생산량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치대논문집10(2) : 15-44, 1986.
17. WHO : World Health Statistics. 1983.
18. 이위지, 김종배 : 서울특별시 치과의사 수급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6(1) : 7-16, 1982.